#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6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김현정・민병덕・정태호

이학영 · 강준현 · 임오경

박균택 · 조승래 · 황명선

박 정・전재수・양문석

이개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고 보고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가상 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의 보고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 ④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게 위탁하여 보관한 가상자산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u>&lt;신 설&gt;</u>	제9조의2(사고 보고 등) ① 가상
	<u>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u>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사고일부터 15일 이내에
	<u>공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의 보고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
	<u>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u>
	공시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